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공제

상품특징

피공제자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, 사용, 관리하는 “개인정보”의 유출·분실·도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, 피공제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 상품

-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(손해배상의 보장)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가입대상

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7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법 제39조의9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함

1. 전년도(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)의 **매출액**이 **5천만원 이상**일 것
2. 전년도 말 기준 저장 · 관리되고 있는 **이용자 수**가 **1천명 이상**일 것

가입금액

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(최소적립금액)의 기준(제48조의7제2항 관련)

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의 가입금액 산정요소		최저가입금액 (최소적립금액)
매출액*	이용자 수**	
800억원 초과	100만명 이상	10억원
50억원 초과 ~ 800억원 이하		5억원
5천만원 이상 ~ 50억원 이하		2억원
800억원 초과	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	5억원
50억원 초과 ~ 800억원 이하		2억원
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		1억원
800억원 초과	1천명 이상 10만명 미만	2억원
50억원 초과 ~ 800억원 이하		1억원
5천만원 이상 ~ 50억원 이하		5천만원

* 매출액: 법인(기업)의 총매출액을 의미하며, 손익계산서상 총 매출액임. 5천만원 미만은 면제
** 이용자 수: 1천명 미만은 면제

소프트웨어공제조합

보장내용

구분	약관명	약관 설명
의무	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	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금, 방어비용, 손해방지경감비용 등
선택	신용정보유출 등 손해보장	신용정보의 유출 등으로 인해 해당 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됨으로써 제3자에게 경제적 손해가 생긴 것에 대한 배상책임 담보
	위기관리컨설팅비용	위기관리서비스에 의해 발생한 비용 등
	위기관리실행비용	원인조사 비용, 신문/TV 사죄광고 게재 비용 등
	과징금보장	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하여, 동법에 의거 처분 받은 과징금 보장 (단, 과태료,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과징금은 보장되지 않음)

※ 상기 내용은 약관의 일부를 발췌 또는 요약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FAQ

① 이용자수 : 이용자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"저장·보관"하는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일 방문자수를 의미하지 않음

② 매출액 : 매출액의 범위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에 한정되지 않으며, 법인(기업)의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을 의미

③ 보험료 : 매출액, 이용자수, 업종, 정보보안 수준 등에 따라 차등

매출액	이용자수	예상 보험료
5억원	5천명	약 12만원
10억원	1만명	약 16만원

※ 공제기간 1년, 일시납 기준이며 업종 등의 특성 및 조합 요율 변경 등에 따라 공제료는 변동할 수 있음

신청방법

- 견적신청: 홈페이지 -> 손해공제 안내 -> 개인정보보호
- 간편 견적신청 : 아래 내용 작성 후 메일로 견적요청(sw10@ksfc.or.kr)

매출액	원	이용자수	명
상호		담당자	
사업자번호		전화번호	

- 증권출력: 홈페이지 로그인 ->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 -> 계약목록

가입문의

소프트웨어공제조합(www.ksfc.or.kr) 02-2141-7852~4, Fax 02-2141-7801